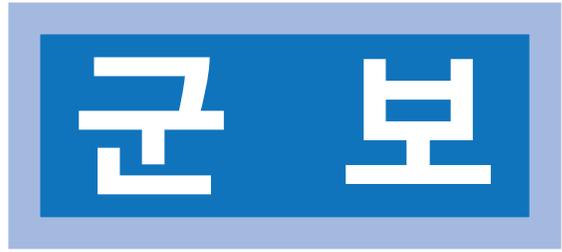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15호 2023. 8. 16. (수)

훈 령

장수군 훈령 제617호

장수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폐지규정 1

규 칙

장수군 공고 제2023-939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장수군 공고 제2023-942호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5
장수군 공고 제2023-950호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장수군 공고 제2023-952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장수군 공고 제2023-961호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3
장수군 공고 제2023-963호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장수군 공고 제2023-964호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규칙 폐지안 59
장수군 공고 제2023-972호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3
장수군 공고 제2023-975호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0
장수군 공고 제2023-977호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계획 89

회 람								
--------	--	--	--	--	--	--	--	--

장수군 훈령 제617호

장수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폐지규정

장수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
한다.

2023년 8월 16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에서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폐지

장수군 공고 제 2023-939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수군 투자촉진 조례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투자기업 유치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신설(안 제4조제5항,6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에 장수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및 위촉해제 기준 신설을 통한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예방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제출기간 : 2023. 8. 7. ~ 2023. 8. 27.(20일간)
-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마.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전화 : 063-350-2181, 팩스 : 063-350-5708)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전화 : 063-350-2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수군 투자촉진조례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투자기업 유치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신설(안 제4조제5항,6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에 장수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및 위촉해제 기준 신설을 통한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예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법제·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2023. 8.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공포 : 2023. 9.

4. 따로 붙임

가.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참고자료(권익위 권고 공문 및 타기관 사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5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등) ① ~ ④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조(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4. 제5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

2.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작 성 자 :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서윤정

붙임	참고자료
----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3998(2022. 10. 25.)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붙임 1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 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1 개선권고문의 Ⅵ. 조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추진계획(붙임2 양식)**'을 **2023. 1. 26.(목)까지 제출**하시고, **개선권고 조치기한인 2023. 6. 30.까지 이행을 완료한 후 최종 이행실적(붙임2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성 부패요인인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별첨】**과 같이 발굴하여 통보하오니 **자체 규제심사기구에서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79개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오니,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이행조치 등을 위해 지방의회 및 소관부서로 이송처리 바랍니다.

- 붙임 : 1. (의결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1부.
 - **【별첨】**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규제혁신 개선과제안. 1부.
 2. 개선권고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양식) 1부.
 3. (참고자료) 의결서 한글파일.
 4. (참고자료) 지자체별 개선과제 현황. 끝.

새롭게 도착하는 행복장수



장 수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실적 제출 요청

-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709(2022. 12. 20.)호 및 2025(2023. 6. 28.)호와
관련입니다.
- 2. 개선권고의 이행 조치 기한('23. 6. 30.)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권고의 **최종 이행
실적을 불임2 양식**에 따라 **'23. 7.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23. 1월)한 개선권고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여, '23. 6. 30.기준 이행실적을
제출바라며, 완료되지 않은 건은 추진 계획으로 제출

- 붙임 1. 장수군 자치법규 개선권고 현황(자세한 사항 의결서 참고) 1부,
2. 개선권고 이행실적(양식) 1부,
3. 의결서 1부,
4. 지자체별 현황 1부. 끝.

장 수 군



수신자 장수군의회(의회사무과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자치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생경제과장, 건
실교통과장, 체육관광물산업소장

주무관 유승복 감사법무팀장 양규삼 기획조정실장 전일 2023. 7. 6.
조용호

장수군 자치법규 개선권고 현황

유형	자치법규명	문제점	개선방안
유탁·투자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14.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 부족 ②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③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부재	14.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 제고 ②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신설 ③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마련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15. 민간위탁 사업 허술 및 특혜 시비 ② 위촉위원의 구성비율이 없어 내부위원 위주로 위원회 구성 우려 ③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인사 조치 없이 시정조치로만 한정	15.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② 위촉위원의 구성비율 확대(공무원 수 1/3 초과되지 않게) ③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

[타 기관 우수사례]

■ 포항시 「포항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의결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실명제) ①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주관부서의 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③ 용역 실명공개 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인터넷 게시판(시 홈페이지, 내부행정시스템)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

장수군 공고 제2023-942호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 장수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나. 비용의 부담,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다. 수술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4. 금후계획

- 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 2023. 8월 중
- 나. 입법예고 : 2023. 8월 중
- 다. 의회 안건 제출 : 2023. 9월 중
- 라. 공포 및 시행 : 2023. 10월 중

4. 따로 붙임

- 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1부.
- 나.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1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신청일 전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술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는 퇴원한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술비 지원 금액(제5조 관련)

구 분	지원 금액(1회 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	(한쪽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측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거,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기관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태 등
- 관련사항 :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진료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원 자격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관련 상담, 검진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행 및 수술비 지원
- 무릎 인공관절 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진료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 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택)	(휴대폰)	
	진단명	무릎 관절염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 왼쪽 <input type="checkbox"/> , 양쪽 <input type="checkbox"/>)		

상기인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비 지원 내용

지원질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지원범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 급여 항목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노인 무릎 수술비 지원 사업 수행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부터 추진할 사업(3년)에 대한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1,17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합 계
지 출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2	60	60	132
	소계	12	60	60	132
수 입	-	-	-	-	-
	소계	-	-	-	-
총비용		12	60	60	60

4. 재원조달방안 : 군비 100%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의존재 원	소계	-	-	-	-
	-	-	-	-	-
자체수 입	소계	12	60	60	132
	기타	-	-	-	-
합 계		12	60	60	132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장 최영희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인쇄 : 구진아 / 의료지원과 (2023-07-27 16:54:50)

청령곶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북 장수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지원과-13756(2023. 7. 18)호로 협의 요청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장수군수(의료지원과장), 장수군의회위원장(의회사무과장), 청령곶읍장(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나 급)	박영은	사회보장조정 과장	신은경	사회보장위원 전결 2023. 7. 26	회사무국장 이상현
--------------	-----	--------------	-----	-----------------------	-----------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5231 (2023. 7. 26.) 접수 의료지원과-14367 (2023. 7. 26.)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로 143(어진동)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740 팩스번호 044-202-1976 / duddms4410@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판 119, 힘겨울 땀 129

문서관리카드 의료지원과-14367 1/1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전북 장수군)

<p>검토결과</p>	<p>협의완료</p>
<p>필수 검토사항</p>	<p>○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p> <p>- 단, 동 사업 운영시 중앙사업 및 타 법령 등에 의해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중복을 철저히 제거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함.</p>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3 - 950호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지원 등

-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지급 근거 수정(안 제24조제1항)
("1인당 2만원" →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변경)
- 읍·면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2항)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지원" 할 수 있다 변경 및 읍·면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350-2139, 팩스 : 063-350-5705, 이메일 : abcice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담당자(☎063-350-21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1인당 2만원 내의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비를 지급”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3 - 952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이장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우리군 이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반장의 교체(안 제11조)

- “읍·면장은 이·반장이 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마을 세대의 3분의2 이상이 서면으로 이·반장의 교체를 요청하였을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여 이·반장을 교체 할 수 있다.” 신설

나. 사기진작(안 제16조의2)

- 이장협의회 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행정구역 분리·반 조정(별표 2)

라. “별표 2” 개정

- 장수읍 장수리 리장수 오기 수정(“7”→“8”)
- 장수읍 노하리 노하마을을 “노하”, “신천”으로 분리 및 1개반 신설

읍면	현 행			조 정			비고
	법정리	분 리	반	법정리	분 리	반	
계	73	217	465	73	218	466	
장수읍	13	45	95	13	46(1)	96(1)	
산서면	14	34	72	14	34	72	
번암면	11	32	61	11	32	61	
장계면	10	32	82	10	32	82	
천천면	10	28	69	10	28	69	
계남면	8	29	46	8	29	46	
계북면	7	17	40	7	17	40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350-2139, 팩스 : 063-350-5705, 이메일 : abcice1@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담당자(☎063-350-21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 나.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조례 제 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장은 이·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반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장은 이·반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마을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이·반장의 교체를 요청하였을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여 이·반장을 교체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 중 “체육대회·화합행사”를 “회의참석·체육대회·화합행사”로 한다.

별표 2의 “장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합계”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장수	장수	8	교촌	1	상수명거리
				2	본동
				3	아건너
				4	영단거리
			중동	1	아건너
				2	구시장다리
				3	본정통
			준비	1	핑계통
				2	취락마을
				3	성산마을
			하비	1	본정통
				2	본동
			부경	1	부경
				1	아랫동네
			남동	2	만쟁이
				3	웃동
				4	다릿거리
				북동	1
			2		본동
			3		본정통하
			4		본정통상
			관두	1	북동주공1
				2	북동주공2
				3	북동주공3
	4	북동주공4			
	노하	6	노하	1	웃대비
				2	아랫대비
				3	봉강
			신기	1	신기
				1	왕대
				1	판둔
				1	서동
1				타워팰리스	
신천	1	신천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소계	13		46	96	
합계	73		218	46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이·반장의 교체) <u>이·반장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16조의2(사기진작) ① (생략)</p> <p>② <u>이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장수군이장단 협의회의 <u>체육대회·화합행사</u>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별표 2]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中</p>	<p>제11조(이·반장의 교체) ① <u>읍·면장은 이·반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반장을 교체할 수 있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읍·면장은 이·반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마을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이·반장의 교체를 요청하였을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여 이·반장을 교체할 수 있다.</u></p> <p>제16조의2(사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회의참석·체육대회·화합행사</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中</p>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장수	장수	7	교촌	1	상수명거리	장수	장수	8	교촌	1	상수명거리		
				2	본동					2	본동		
				3	아건너					3	아건너		
			중등	4	영단거리				4	영단거리			
				1	아건너				1	아건너			
				2	구시장다리				2	구시장다리			
			준비	3	본정통				3	본정통			
		1		핑계통	1				핑계통				
		2		취락마을	2			취락마을					
		하비	3	성산마을	3			성산마을					
			1	본정통	1			본정통					
			2	본동	2			본동					
		부경	1	부경	1			부경					
			1	아랫동네	1			아랫동네					
		남동	2	만쟁이	2			만쟁이					
			3	웃동	3			웃동					
			4	다릿거리	4			다릿거리					
			1	시장통	1			시장통					
		북동	2	본동	2			본동					
			3	본정통하	3			본정통하					
4	본정통상		4	본정통상									
1	북동주공1		1	북동주공1									
관두	2	북동주공2	2	북동주공2									
	3	북동주공3	3	북동주공3									
	4	북동주공4	4	북동주공4									
	1	노하	1	노하									
노하	2	웃대비	2	웃대비									
	3	아랫대비	3	아랫대비									
	1	봉강	1	봉강									
신기	1	신기	1	신기									
	1	왕대	1	왕대									
판둔	1	판둔	1	판둔									
	1	서동	1	서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소계	13	45	95		소계	13	46	96		소계	73	218	466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합계	73	218	466					

장수군 공고 제2023-961호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 중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 마련을 권고
- 이에 따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모전 운영 조례의 구성 목적, 정의, 운영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공모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공모전의 공모 및 응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 공모전 심사, 수상작 공개,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8. 3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43(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Orondo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063-350-2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장수군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 라. 다른 공모전에 수상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③ 군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수상작 결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심사)

① 군수는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23 - 963호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내 일부 조문 정비
 - 주민등록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전화 : 063-350-2304, 팩스 : 063-350-5711, 이메일 : jsmclon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종합민원팀 담당자(☎063-350-23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 2] 개정안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를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장수군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7조의8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u>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주민등록법</u> 」 제2조제2항에 의하여 <u>장수군수</u> ----- ----- -----.
제2조(권한의 위임) ① <u>군수가</u>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u>각호</u> 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신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u>장수군수</u> (이하 “ <u>군수</u> ”라 한다)----- ----- <u>각 호</u> ----- ----- . 다만, 「 <u>주민등록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u>군수도</u> 할 수 있다.
1. <u>법 제17조의8의</u>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1. <u>법 제24조</u> ----- -----
2. <u>법 제18조의2에</u>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u>법 제30조</u> ----- -----
3. <u>법 제21조</u> 위반자에 대한 조치	3. <u>법 제37조</u> ----- --

<p>4. <u>법 제18조 및 영 제43조 내지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u>②제1항제4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3조(지휘·감독) <u>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3조(지휘·감독) <u>①제2조</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장수군 공고 제2023 - 964호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규칙 폐지안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장 수 군 수

1. 폐지이유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규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의거하여, 대법원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제정(2021. 6. 10.) 및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이 제정(2022. 2. 7.)되어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해당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규칙」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전화 : 063-350-2304, 팩스 : 063-350-5711, 이메일 : jsmclon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종합민원팀 담당자(☎063-350-23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폐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붙임 2] 개정안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장수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3-972호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상위법 폐지 및 제정(기존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2023. 6. 9. 타법폐지, 2023. 7. 10. 시행, 변경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2023. 6. 9. 제정, 2023. 7. 10. 시행)

2023년 8월 11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

: 안 제1조~제5조

- 조례 제정 목적 및 운영원칙,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안 제6조~제16조

- 주민자치회의의 정수, 위원의 자격 및 위촉 방법, 구성원,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 안 제17조~제21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대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안 제17조~제24조

-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업무수행 협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보칙 : 안 제25조~제27조

-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보험, 그 밖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350-2139, 팩스 : 063-350-5705, 이메일 : abcice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담당자(☎063-350-21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조례 제 호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읍·면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장수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5.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

람(다만,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읍·면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천 또는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장이 위촉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읍·면장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학교·기관 및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5.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

최하는 날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그 밖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나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그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특별법 제40조제5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임한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읍·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전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공고 제 2023-975호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담배소매인간의 과다경쟁 방지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관한 내용 신설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제출기간 : 2023. 8. 14. ~ 2023. 9. 2.(20일간)
-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마.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전화 : 063-350-2183, 팩스 : 063-350-5708)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전화 : 063-350-21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담배소매인간의 과다경쟁 방지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관한 내용 신설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나.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법제·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2023. 8.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공포 : 2023. 9.

4. 따로 붙임

가.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3 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을 각각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p>은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 략)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u>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u>에 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 음과 같다. 1. ~ 3. (생 략)</p>	<p>-----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u>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u>-- ----- ----- ----- 1. ~ 3. (현행과 같음)</p>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6. 작 성 자 :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서윤정

붙임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0호, 2021. 12. 29., 일부개정]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3., 2014. 1. 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본조신설 2004. 6. 29.]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는 것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7.>

[본조신설 2009. 7. 1.]

장수군 공고 제 2023-977호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계획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조항이 변경·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의2제1호(정의)를 제1조의3제1호(정의)로 변경.(안 제2조)

3. 금후 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3. 9월 중

나. 전라북도 규칙안 검토, 공포·시행 : 2023. 9월 중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나. 관계법령

5. 의견제출

-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37, FAX : 063-350-5705)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백영선
(전화 : 063-350-213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 2 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개정본문)**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송중인 때
2. 인사위원회의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군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